



제35기 SK주식회사 정기 주주총회 의안 설명서

2026년 3월

- **일시: 2026년 3월 26일(목) 오전 9시**
- **장소: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(서린동) SK빌딩 3층 SUPEX홀**

제1호 의안: 제3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(2025 회계연도)

제2호 의안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- 제2-1호: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일부 변경
- 제2-2호: 이사회 관련 정관 일부 변경
- 제2-3호: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등 기타 정관 정비 관련 정관 일부 변경

제3호 의안: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 선임 (후보: 이계정)

제4호 의안: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

- 한도 금액 : 160억원

제5호 의안: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

재무제표 요약

(단위: 십억 원)

	연결 기준			별도 기준		
	FY25	FY24	YoY	FY25	FY24	YoY
자산	213,520	214,978	△0.7%	26,399	27,233	△3.1%
부채	127,828	134,690	△5.1%	10,828	12,613	△14.2%
자본	85,691	80,288	+6.7%	15,571	14,620	+6.5%
매출액	122,703	123,400	△0.6%	3,612	3,707	△2.6%
당기순이익	3,555	529	+572.0%	1,344	△746	흑자전환

- **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SK이노베이션 · SK텔레콤의 실적 감소 및 자산 손상 인식에도 불구하고, SK하이닉스의 역대 최대 실적 달성으로 전년 대비 3,026십억 원 개선**
 - SK하이닉스는 HBM 수요 증가 및 범용 메모리 업황 개선에 힘 입어 실적 급등
 - SK이노베이션은 화학 시황 악화 · 배터리 자산손상 등으로 적자 규모 확대
 - SK텔레콤은 사이버 침해 사고 영향으로 실적 감소

- **별도 당기순이익은 배당수익 감소 영향에도 불구하고, 투자자산 매각 차익 등으로 흑자 전환**
 - 차입금 상환에 따른 부채 총계 감소 등 재무 건전성 개선 노력 지속

배당 History

(단위: 십억 원)

	FY25	FY24	FY23
주당 배당금(원)	8,000	7,000	5,000
총 배당 수익금	491	820	1,399
총 현금 배당액	441	386	277
배당수익 대비 배당비율	90%	47%	20%
지배주주순이익	1,598	△1,293	△777
배당성향(%)	28%	N/A	N/A

■ 주주 환원 정책 (FY24~FY26)

- 보통주 기준 연간 주당 최소 배당금 5,000원을 설정하고, 자산 매각 이익 등을 활용하여 시가총액의 1~2% 규모 자기주식 매입·소각 또는 추가 배당금 지급
- 2025년은 보통주 최소 배당금 5,000원에 더하여, SK스페셜티 등 자산 매각 이익을 활용하여 추가 배당금 3,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(전년 대비 보통주 주당 배당금 14% 증가)
-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으로 주주의 실질 배당소득 증가 효과 기대

■ 정관 변경 추진의 배경

- 2025년 7월 및 9월 개정된 상법 개정 사항 중 당사 정관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

■ 제2-1호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일부 변경

- 제28조(이사의 선임) 제4항 : 기존 정관상 집중투표 배제 조항을 삭제

[신구조문대비표]

현행 정관	변경 (案)	비고
제28조 (이사의 선임) ㉔ 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에 의한 집중투표의 방법을 채택하지 않기로 하며, 주주는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.	제28조 (이사의 선임) ㉔ <삭 제> <2026. 3. 26.>	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해당 조항 삭제
<신 설>	부칙 <2026. 3. 26.> 제4조 (집중투표에 관한 적용례) 제28조 제4항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	상법상 관련 개정 규정의 시행시점(2026. 9. 10.)을 고려하여 시행시점 규정

■ 제2-2호 이사회 관련 정관 일부 변경

- 제29조(이사의 임기) 제3항 등 :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
- 제49조(감사위원회 위원) 제5항 등 : 감사위원회 위원 선·해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 합산 3% 초과 주식 의결권 제한
- 제49조(감사위원회 위원) 제9항 등 :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 인원 확대 (1명 → 2명)

[신구조문대비표]

현행 정관	변경 (案)	비고
<p>제28조 (이사의 선임)</p> <p>①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를 둔다. 단, 이사 중 일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며 사외이사의 수, 자격요건, 선임방법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사외이사에 관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사회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②~④ (생략)</p> <p>⑤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. <개정 2015. 6. 26., 2021. 3. 29.></p> <p>⑥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에서 정한다. <개정 2021. 3. 29.></p>	<p>제28조 (이사의 선임)</p> <p>①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를 둔다. 단, 이사 중 일부를 독립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며 독립이사의 수, 자격요건, 선임방법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독립이사에 관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사회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26. 3. 26.></p> <p>②~④ (생략)</p> <p>⑤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한다. <개정 2015. 6. 26., 2021. 3. 29., 2026. 3. 26.></p> <p>⑥ 독립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에서 정한다. <개정 2021. 3. 29., 2026. 3. 26.></p>	<p>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</p>

■ 제2-2호 이사회 관련 정관 일부 변경 (계속)

현행 정관	변경 (案)	비고
<p>제29조 (이사의임기)</p> <p>㉓ 사외이사가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	<p>제29조 (이사의임기)</p> <p>㉓ 독립이사가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 3. 26.></p>	<p>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</p>
<p>제40조 (위원회)</p> <p>㉑ 이사회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 <개정 2021. 3. 29.>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40조 (위원회)</p> <p>㉑ 이사회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 <개정 2021. 3. 29., 2026. 3. 26.></p> <p>3. (생략)</p>	<p>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</p>
<p>제49조 (감사위원회 위원)</p> <p>㉔ 감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,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15. 6. 26.></p>	<p>제49조 (감사위원회 위원)</p> <p>㉔ 감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하고, 독립이사 아닌 위원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15. 6. 26., 2026. 3. 26.></p>	<p>[제4, 7항]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</p>

■ 제2-2호 이사회 관련 정관 일부 변경 (계속)

현행 정관	변경 (案)	비고
<p>제49조 (감사위원회 위원)</p> <p>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p> <p>㉕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p> <p>㉖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</p> <p>㉗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49조 (감사위원회 위원)</p> <p>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<개정 2026. 3. 26.></p> <p>㉕ <삭 제> <2026. 3. 26.></p> <p>㉖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. <개정 2026. 3. 26.></p> <p>㉗ (현행과 동일)</p> <p>㉘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 <신설 2026. 3. 26.></p>	<p>[제5, 6항]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·해임 시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의 소유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% 초과 주식에 대해 의결권 제한</p> <p>[제9항]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 인원 변경 (1명→2명)</p>

■ 제2-2호 이사회 관련 정관 일부 변경 (계속)

현행 정관	변경 (案)	비고
<p><신 설></p>	<p>부칙 <2026. 3. 26.></p> <p>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 (생략)</p> <p>제3조(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) 제28조 제1항, 제5항, 제6항, 제29조 제3항, 제40조 제1항 제2호, 제49조 제4항 및 제7항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4조 (생략)</p> <p>제5조(감사위원회 위원 선해임시의결권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제49조 제5항, 제6항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상법상 관련 개정 규정의 시행시점(제3조의 경우 2026. 7. 23., 제5조의 경우 2026. 7. 23.)을 고려하여 경과조치 및 시행시점 규정</p>

■ 제2-3호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등 기타 정관 정비 관련 정관 일부 변경

- 제22조(소집지와 개최방식) 제2항 등 : 전자주주총회 관련 조항, 전자문서를 통한 대리권 증명 조항 신설
[신구조문대비표]

현행 정관	변경 (案)	비고
<p>제22조 (소집지)</p> <p>주주총회는 회사 본점 소재지 혹은 인접지역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한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22조 (소집지와 개최방식)</p> <p>① 주주총회는 회사 본점 소재지 혹은 인접지역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한다.</p> <p>②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(이하 "전자주주총회"라 한다)를 개최한다. <신설 2026. 3. 26.></p>	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에 따른 근거 규정 마련
<p>제25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)</p> <p>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각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25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)</p> <p>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각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 3. 26.></p>	전자문서를 통한 대리권 증명 방법 반영
<p>제27조 (의사록)</p> <p>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요령 및 채택된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모든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27조 (의사록)</p> <p>①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요령 및 채택된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모든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.</p> <p>②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본점에 비치한다. <신설 2026. 3. 26.></p>	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에 따른 근거 규정 마련
<p><신 설></p>	<p>부칙 <2026. 3. 26.></p> <p>제2조(전자위임장 및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경과조치)</p> <p>제22조 제2항, 제25조 및 제27조 제2항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	상법상 관련 개정 규정의 시행시점(2027. 1. 1.)을 고려하여 경과조치 및 시행시점 규정



이계정

(생년월일 :
1972. 12. 23)

■ 학력사항

- 美 University of California – Berkeley (LL.M.)
-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/박사
- 서울대학교 사회학 학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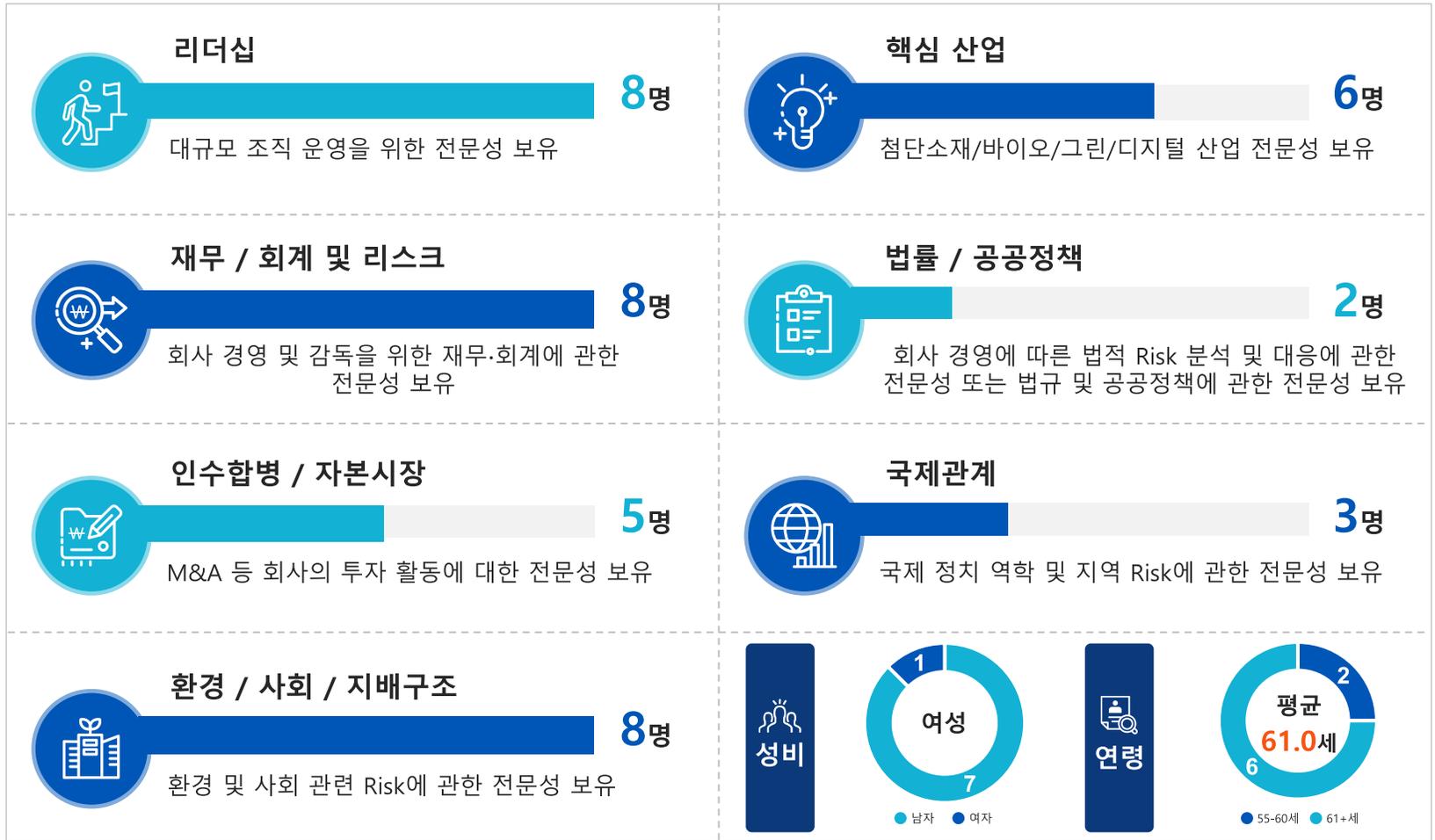
■ 경력사항

- 2014 ~ 現 :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- 2025 : 미국 Harvard Law School 방문교수
- 2013 ~ 2014 : 사법연수원 교수
- 2010 ~ 2013 :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
- 2006 ~ 2010 : 제주지방법원 판사
- 2004 ~ 2006 :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
- 2002 ~ 2004 :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

■ 후보 추천 사유

- 당사는 체계적 Board Skills Matrix 기반의 균형 있는 이사진 구성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박현주 이사(兼 감사위원)의 후임으로 '법률/공공정책'에 전문성을 보유한 이계정 후보를 추천
- 후보는 12년의 판사 경력 및 12년의 법학 교수 경력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 관리가 가능하며, 회사의 준법 통제 및 Compliance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- 후보는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며, 판사 재직을 통해 체화한 사실 판단의 엄정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바탕으로 재무보고 검토·내부통제 감독·경영진에 대한 독립적 견제 등 감사위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전체 주주 이익 보호 및 이사회 투명성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

■ SK Inc. 이사회 역량 구성표 (Board Skills Matrix)



(2026.3월 주주총회 이후 예상)

■ 이사보수한도

(단위: 백만 원)

	FY26	FY25	FY24	FY23	FY22	FY21
한도 금액	16,000	18,000	18,000	22,000	22,000	22,000
이사의 수	8	8	8	9	9	9
사외이사의 수	5	5	5	5	5	5

■ 2025년 이사보수 지급내역

(단위: 백만 원)

	사내이사	사외이사	합계
지급 규모	6,135	713	6,848

- 2026년도 이사보수한도는 2025년도 보수한도 대비 실 집행률 및 2026년도 예상 이사보수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 대비 감소한 160억원으로 결정

■ 보유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극대화 및 자본 효율성 제고

-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17,982,486주 중 **임직원 보상분 3,288,098주 (발행주식 총수의 약 4.5%)를 제외한 전량을 2027년 1월까지 모두 소각**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함

■ 보유 및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*

구분	취득방법	주식의 종류	수량 (주)	비율 (%)	처분 예정 시점 ¹⁾
자기주식 소각	배당가능이익으로 직접 취득	보통주	7,000,583	38.9%	~'27.1월 ²⁾
		보통주	7,692,018	42.8%	
	우선주	1,787	0.0%		
임직원 보상	특정목적취득	보통주	3,288,098	18.3%	~'29.3월 ³⁾
전체 자기주식 수		-	17,982,486	100.0%	-

1) 처분 또는 소각 예정 수량의 전량 처분 또는 소각 완료 시점 기준

2) 2026.3.10 이사회에서 결의한 소각 예정 시점임

3) 주식매수선택권 등 현재까지 부여한 주식보상의 행사기간 만료일 기준이며 향후 임직원에게 대한 주식보상 추가 부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* 기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세부 내역은 주주총회소집공고 공시 참조

End of Document